

## - 목 차 -

I. 연구용역의 개요	1
II. 과업의 주요내용	3
III. 과업 수행지침	6
IV. 보안대책	10
V. 보고서 제출	12
VI. 과업의 추진계획(예정 공정표)	14
VII. 제안관련 일반사항	15
VIII. 계약 상대자 선정 방법	18
IX. 평가방법 및 기준	20
[참고] 과업제안 관련 서식 모음	24

# 교통시설 내 혼잡구역 안전관리체계 연구

## - 제안요청서 -

2023. 1

국 토 교 통 부  
교통안전정책과

### I 연구용역 개요

#### 1. 용역명

- 「교통시설 내 혼잡구역 안전관리체계 연구」

#### 2. 예산 : 100백만원 (총액입찰, 부가세 포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3.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

#### 4. 추진배경 및 목적

- 「교통안전법」 제4조에 따라 교통시설 설치·관리자는 안전시설 정비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22.4) 이후 최근 교통량이 대폭 증가<sup>\*</sup>하였으며, 침투시간<sup>\*\*</sup>대형 행사 개최 시 많은 이용자가 몰리고 있음
  - \* (대중교통 통행량) '21년 50.2억 통행 → '22년 56.4억 통행(12.4% 증가)
  - \*\* (도시철도) 7~9시, 18~20시 수요가 전체의 32%, 비침투시 대비 2.25배('19.10월)
- 또한 수도권 인구집중<sup>\*</sup>이 심화되어 수도권 거주자들은 출·퇴근 시간대에 교통시설 내 혼잡상황으로 인한 위험에 직면하고 있음
  - \* 수도권 거주인구 비율 '21년 기준 50.4%(00년 46.3% 이후 지속 상승)
- 현재 터미널·환승센터 등 교통시설은 시설물 안전관리를 중심으로

운영 중이나, 혼잡한 상황에 따른 이용객 관리 시스템은 미흡

- 상황별 위험도 판단기준, 위험도에 따른 관리 매뉴얼이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할 필요

#### 5. 과업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국가통계 발표 시기를 고려하여, 필요시 우선적으로 2019년까지의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세부 분석 추진
  - \* 자료 구득이 어려운 경우는 구득할 수 있는 최근의 자료를 활용함
- 현장조사 등의 조사는 조사 시점으로 함
- 공간적 범위
  - 도로가 아닌 교통시설로 정의된 철도·지하철 역사 및 승강장, 환승센터(버스정류장 포함), 버스터미널, 공항 등을 공간적 범위로 함
  - \* 분석대상의 구체적 범위는 추후 협의

## II 과업의 주요내용

### 1. 혼잡구역 관리 대상 교통시설 정의

- 현재 운영중인 교통시설, 건설예정중인 교통시설별 특성 조사
  - 교통시설별 구조, 면적, 이용자 밀도, 장애물(계단, 가판대 등), 이용자 이동 동선, 주변환경 특성 등 조사\*
- \* 현장조사 또는 도면조사 및 기존 조사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혼잡구역 관리가 필요한 교통시설 선정
  - 혼잡구역의 시간적, 공간적 패턴, 안전관리의 주체,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 대상 교통시설 선정
- 교통시설 내 사고발생(추락, 넘어짐, 끼임 등) 통계 현황 및 혼잡 상황 관련 민원자료 분석
  - \* 해당 교통시설의 운영자 및 관리자로부터 자료 구득이 가능할 시

### 2. 국내·외 교통시설 혼잡관리 사례조사

#### 가. 국내·외 교통시설 혼잡관리 관련 지침 조사

- 교통시설별 안전관리 법규, 지침 등 규정 현황 조사
- 재난대응 매뉴얼 등 유사 안전관리 지침 사례조사

#### 나. 교통시설 혼잡관리 사례 조사

- 교통시설 내 혼잡구역 분산을 위한 시설물, 정책, 시스템 등 조사
- 교통시설 내 혼잡관리 관련 시뮬레이션, 연구결과 등 시사점 분석
- 혼잡구역 발생 시 현장 대응 사례 조사

### 3. 교통시설별 혼잡구역 위험도 등급 판단 기준 정립

#### 가. 위험도 등급 판단 지표 선정

- 교통카드 데이터, 통신데이터, CCTV 영상 데이터, 시뮬레이션 등을 통한 데이터 수집 방법 및 혼잡구역 안전관리 활용 가능성 검토
  - 데이터 수집주기, 신뢰성, 분석방법론 등 검토
- 수집 데이터 분석을 통한 위험도 영향 지표 선정
  - 교통시설 특성, 면적, 장애물, 밀도, 유동인구 진입율, 인적특성 등 검토

#### 나. 교통시설별 위험도 등급 판단 기준 정립

- 피난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위험도 등급 판단 기준 마련
  - 이용객이 집중된 혼잡한 상황에 관한 시나리오 상황 구현
  - 피난 및 보행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등급 판단 방법론 제시
  - 위험도 등급의 분류 기준 제시
- 교통시설별, 시간대별 위험도 등급 판단 체계 마련

### 4. 위험도 등급별 혼잡구역 안전관리 체계 정립

- 교통시설물별 이용자 동선 등을 고려한 정보안내 체계, 필요 시설물 설치 등 가이드 제시
- 교통시설 관리주체의 위험도 등급별 이용자 분산, 일방통행, 진입통제 등 안전관리 가이드 방안 제시
- 시설 이용자의 행동 요령 제시
- 교통시설 혼잡구역 안전관리 대응 매뉴얼(안) 마련

## III 과업수행 지침

### 1. 일반사항

-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0개월로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세부과업의 담당자 명단 및 과업일정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고, 동 계획에 따라 전체 과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은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따라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을 위해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전문인력은 자기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관계 전문가 및 관련 연구기관 등을 포함한 연구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동 자문회의 결과에 따라 연구수행 과정상의 주요내용을 검토·보완할 수 있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과업성과의 향상을 목적으로 이해관계자(학계, 연구원, 교통시설운영·관리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자문회의 등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검토하여 필요시 과업에 반영한다.
- 과업지시서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간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등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36조에 따른다.

- 참여연구진은 발주처와 협의 선정하되, 발주처의 예산설계서 또는 과업수행자의 당초 연구계획(안)에 따라 그 인원수 및 인력이 과업에 그대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 한 경우 동급 이상의 경험·지식·능력을 가진 자를 발주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 발주처는 과업수행자가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연구원의 교체 또는 필요 시 증원을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과업시행과정에서 과업지시내용 및 용역비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과업지시내용 및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조사자료 등 과업성과품에 대한 판권 및 모든 권리와 과업수행을 위해 구입한 각종 자료 등은 발주처가 소유하며,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대여할 수 없다.

## 2. 세부사항

- 연구진행에 대해 발주처의 설명요구가 있을 때에는 연구용역 책임자와 각 부문별 책임연구원이 참여하여 연구내용을 설명하고 발주처의 수정·지시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대행사업 수행 중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방침을 정하여야 한다.
- 연구과정에서 취득한 제반자료와 정보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임의로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임의유출에

- 7 -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계획공정에 비하여 현저하게 미달되거나 중간성과품이 미흡하여 계약기간 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 과업수행이 성실하지 못하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 이행하지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
-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라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타 연구활동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 6. 기타사항

- 발주처의 설명 요구가 있을 경우 과업 책임자 또는 참여자가 연구내용을 설명하고 발주처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 한국은행, 기타 공공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통계자료 순으로 활용하고, 자료의 출처 및 연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장래 지표는 정부공식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하며, 기타는 정부기관의 잠정자료, 당해 부문 전문기관의 자료 순으로 적용하고,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 조사하여 발주처와 협의·결정한다.

- 9 -

대한 책임은 용역수행자에게 있다.

- 본 용역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인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비용부담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 용어는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괄호를 사용하여 한문·영문 등을 표기하여야 하며, 용어의 뜻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용어의 정의를 하여야 한다.

## 3. 설계변경의 조건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과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발주처의 방침에 따라 과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 과업범위가 변경되거나 과업내용 및 물량이 증감되었을 경우
- 기타 발주처의 사정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4. 과업보완에 대한 의무이행

- 과업수행 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이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하며, 발주처는 관계법령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5.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 IV 보안대책

- 수급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국토교통부 훈령 제906호)”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서식에 의거 자필로 서명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대표자의 책임 하에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과업착수 보고서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자료 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비밀, 대외비 등 보안관련 주요사항에 대한 처리시 국토부 용역감독관의 확인을 받고, 해당사항에 대한 업무일지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서 등 용역성과물(확정안 포함)은 용역감독관과 사전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 또는 일반으로 생산·관리하여야 한다.
-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 비밀취급 인가 업체를 이용하고 보안책임자가 입회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 명시(업체 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하고 원지, 폐지, 잉여분 등은 회수하여 철저히 파기(소각 등)하여야 한다.
-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용역감독관의 확인을 받고 “가”항에 의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처에서는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전

- 10 -

반에 대한 보안 관리 실태를 지도·점검할 수 있다.

- 과업수행과 관련된 문서, 자료 등은 과업이외의 기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동의 없이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 기타 과업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가 과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을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시행세칙” 등 보안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보안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규정」,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성과물 제출

종류	제출기일	제출부수
착수보고서	착수 1개월이내	5부
중간보고서	착수 6개월내	5부
최종보고서	준공시	10부

※ 보고서 제출 부수는 국토부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

※ 보고서 작성에 활용된 모든 현장조사 및 분석 자료는 전자파일(xls, hwp 등) 형태로 작성하여 USB에 담아 제출함.

**V 보고서 제출**

- 착수계 및 예정공정표 제출
  -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계 및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함
- 보고시기 및 방법
  - 착수 보고 : 착수 후 한달내에 세부 연구내용 및 수행방법, 추진 일정, 분야별 참여인력 등을 포함한 세부 과업수행계획을 작성하여 서면 및 구두로 보고한다.
  - 중간 보고 : 과업의 중간 연구결과 및 향후 연구계획 등을 착수 후 6월내에 서면 및 구두로 보고한다.
  - 최종 보고 : 과업 종료 1개월 전에 최종 연구결과를 작성하여 서면 및 구두로 보고한다.
- 본 과업이 완료되면 과업 지시서에 명시된 내용의 결과보고서와 요약서를 작성하여 보고서 제출 10일전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 최종 보고서 원안은 발주처의 협의를 받아야 하고, 협의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보충 설명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협의 결과 성과물이 과업 지시서 내용과 상이하거나, 미흡하여 발주처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보완하여 계약기간 내에 인쇄하여 납품한다.
-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 소개하는 소책자,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야 한다. 소책자, 홍보물의 형태와 부수는 발주처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VI 과업의 추진계획(예정 공정표)**

구분 (착수일로부터)	비중	1	2	3	4	5	6	7	8	9	10월
1. 혼잡구역 관리 대상 교통시설 정의	15	10	5								
가. 교통시설별 특성조사		10									
나. 관리대상 교통시설 선정			5								
2. 국내외 교통시설 혼잡관리 사례조사	15			5	10						
가. 국내외 교통시설 혼잡 관리 관련 지침 조사				5							
나. 교통시설 혼잡관리 사례조사					10						
3. 교통시설별 혼잡구역 위험도 등급 판단기준 정립	35					10	15	10			
가. 위험도 등급 판단 지표 선정						10					
나. 교통시설별 위험도 등급 판단기준 정립							15	10			
4. 위험도 등급별 혼잡구역 안전관리 체계 정립	30							10	10	10	
자문회의	5	2				2					1
공정율(%)	월별	12	5	5	10	12	15	20	10	10	1
	누계	12	17	22	32	44	59	79	89	99	100

## 1. 참가 자격(아래 조건을 동시 충족할 것)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 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2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인설립허가서 등 증빙서류 제출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 코드:1169)으로 입찰 참가등록한 업체
-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참가서 확인서 제출요)
- ※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단, 비영리법인의 경우 해당 없음)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15 -

## 2. 제안서 제출 방법

- 가. 제출기간 : 입찰공고문에 의함
- 나. 접수처 : **온라인 제출** (e-발주시스템으로 제안서를 제출)  
※ 제안서 및 입찰등록서류 우편접수 불가함
- 다.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열람 및 문의  
○ 열람 및 문의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교통안전정책과  
○ 연락처 : 044-201-3864
- 라.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에 의함
- 마. 제안서 설명 및 평가 : 발주기관에서 일정 별도 통보

## 3. 제안서 작성에 관한 사항

- 가. 일반사항
-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에 의하여 정확하고 명료하게 작성하되 필요시 추가하거나 변경 할 수 있음
- 제안서는 표지를 제외한 A4용지 30매 이내로 하며 전자문서(pdf) 형태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가급적 논리적·객관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함
- 발주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체결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16 -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함

## 나. 제안서 효력에 관한 사항

- 제안서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제안서와 계약서가 상이한 내용인 경우 계약서가 우선함
- 계약 후에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자는 일체의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지야 함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 시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름

- 17 -

## 1. 입찰방식 : 경쟁입찰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2. 선정절차

- 제안서 기술평가(90%)와 입찰가격평가(10%)를 실시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해당 분야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 후 업체 선정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 제안서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제안서 기술평가
- 관련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기술 평가 수행
- 기술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붙임 기술평가기표 참고
- 가격평가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의함
- 입찰가격 평가는 제안서 기술평가 후 지정된 장소에서 평가
- 동점 시 처리방침

- 18 -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기타사항
- 입찰 및 낙찰방식에 관하여는 국가계약법과 이에 근거한 관련 규정, 용역입찰유 의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과 일반원칙을 따름

**IX 평가방법 및 기준**

**1.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90%)**

(1)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방법
제안업체 일반현황 (10)	기관평가	- 기업신용평가 등급	5	계량평가
	연구인력	- 책임연구원의 경력	5	계량평가
과업수행 부분 (80)	제안서 개 요	- 제안의 배경 및 목적, 제안의 범위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한 이해	10	비계량 평 가
	과 업 접근방법	- 연구용역 수행을 위한 접근방법 및 기법의 우수성 - 연구수행 범위 설정의 적절성 - 연구수행 방법의 구체성과 논리성 - 문제점 분석 및 해결방법의 접근방법 - 유사 연구용역과의 중복 및 병행 가능성	30	비계량 평 가
	수행계획	- 연구용역 추진일정·방법 및 세부 추진계획의 적정성	20	비계량 평 가
	용역관리 및 사후관리	- 사업자의 품질보증능력(위험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문서관리 등의 적정성) - 사업종료 후 협조 및 지원방안의 적정성	10	비계량 평 가
	연구조직 구 성	- 수행조직의 구성 및 업무분장 적절성	5	비계량 평 가
	기 타	- 현실 반영성 및 새로운 아이디어 제시	5	비계량 평 가
계			90	

(2) 계량평가 분야 항목별 평가기준

- 기관평가(5점)
-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로서도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 책임연구원 경력(5점)

구 분	(가)급	(나)급	(다)급	(라)급
점 수	5	4	3	2

- 책임연구원 평가는 경력증명서상의 해당분야에 대한 참여일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평가기준은 아래와 같음

등급	참여 연구진 평가기준
(가)급	- 박사학위를 취득한자로서 7년 이상 해당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 석사학위를 취득한자로서 11년 이상 해당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 기술사
(나)급	- 박사학위를 취득한자로서 4년이상 해당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 석사학위를 취득한자로서 8년 이상 해당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다)급	- 박사학위를 취득한자 - 석사학위를 취득한자로서 5년 이상 해당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라)급	- 석사학위를 취득한자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 학사학위를 취득한자로서 6년 이상 해당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 \* 책임연구원의 해당분야는 교통관련사업 및 법무업무에 한함
- \* 증빙서류 제출

(3) 비계량평가 분야 항목별 평가기준(80점)

구 분	배점 (A)	평가정도					
		매우우수 (점수>A×1)	우수 (점수>A×0.8)	보통 (점수>A×0.6)	다소 미흡 (점수>A×0.4)	미흡 (점수>A×0.2)	
과업수행 부분	제안서 개요	10	10	8	6	4	2
	과업 접근방법	30	30	24	18	12	6
	수행계획	20	20	16	12	8	4
	용역관리 및 사후관리	10	10	8	6	4	2
	연구조직 구성	5	5	4	3	2	1
	기 타	5	5	4	3	2	1

(4) 기술능력평가 점수 산정

○ 평가점수 : 기술능력 평가항목별 득점의 합계

## 2. 입찰가격 평가(10%)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 점수 산출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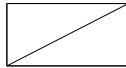
과업제안 관련 서식 모음

## 서 식 일 략

1. 과업제안서(표지)
2. 제안업체(기관) 일반현황
3. 관련 연구분야 인력현황
4. 본 과업 연구진 총괄표
5.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6. 보안서약서
7. 청렴계약서

- 23 -

【서식 #1】



## 과 업 제 안 서

용역명 : 교통시설 내 혼잡구역 안전관리체계 연구

제안사명 : (인)

【서식 #2】

## 제안업체(기관) 일반현황

1. 회사(기관)명			2. 대표자	
3. 용역등록 분야				
4. 주 소				
5. 대표 전화번호				
6. 설립연도			년	월 일
7. 주요연혁				
8. 예산규모	2020년	2021년	2022년	
9. 상시 종업원수				
10. 입찰참가제한 등 징계사항				





## [서식 #5]

###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 ○○○와 ○○○사가 재정·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타 제를 동원하여 보행우선구역 시범사업 연구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 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 명칭 :
- 주사업소의 소재지 :
- 대표자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 회사(대표자 : )
- 회사(대표자 : )
- 회사(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의 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동수급체의 하도급자 및 납품업자에 대해서도 공동연대로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다른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분담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도급 할 수 없다.

제8조 (구성원의 참여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참여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 %
- : %
- : %

② 제1항의 비율은 발주자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때에는 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기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8조에 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 (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면허·도급한도액 등 당해 계약이행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가 제2항의 경우에 의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잔존 구성원 중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구성원을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2항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8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⑤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9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2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 발생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3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 날인하여 각각 보관한다.

년 월 일

○○○ (인)

○○○ (인)

○○○ (인)

## [서식 #6] 보안서약서

### 보안서약서

#### 1. 서약자

- 회사명 :
- 소재지 :
- 직책(직위) :
- 성명 :

#### 2. 내용

本人(本社)은 국토교통부에서 발주하는 「교통시설 내 혼잡구역 안전관리 체계 연구」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본 사업에서 습득한 **국토교통부의 제반 업무내용**에 대하여제안서 제출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에 누설·공개 또는 무단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 상기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本人 및 本社**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023년 월 일

위 서약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 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 [서식 #7] 청렴계약서

### 청렴계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 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설계·감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아래에 해당 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지불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10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2개월 내지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내지 1년 4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조의2제1항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으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 및 준공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7.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3.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